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 16
----------	----------

제출일자	2005. 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산세 납부 기간을 변경함.(안 제28조)
 - 종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개정 : 토 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주 택⇒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함.(안 제29조)
-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을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함.(안 제72조 내지 제83조)

□ 개정근거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공포)
- 행정자치부 세제과-86(2005. 1. 14)
- 경상남도 세정과-494(2005. 1. 18)호의 표준안에 의함.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4조중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1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각호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며,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34조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중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제1항제1호의 [표] 영업용 및 비영업용 배기량중 “1,500cc이하”를 각각 “1,600cc이하”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및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으 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8절(제72조 내지 제83조)을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 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6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7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 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2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3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제1항 및 동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법 제234조의21”를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95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에”를 “재산세과세대장에”로 한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23조의1제1항중 “국세기본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38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41조의1중 “교통세법 ”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41조의3제1항제1호중 “교통세법 ”을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관세법 ”을 “「관세법」”으로 하고, 제42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 ”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제42조 내지 제52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귀속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u>종합토지세</u> ③ (생 략)</p> <p>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p> <p>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과세대상 등)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p> <p>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p>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7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삭 제></p>
<p>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p>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토지</p> <p style="margin-left: 20px;">가. 종합합산과세대상</p> <table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 5px;">5,000만원이하</td> <td style="padding: 2px 5px;">1,000분의 2</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5,000만원초과</td> <td style="padding: 2px 5px;">10만원+5,00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1억원이하</td> <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1억원초과</td> <td style="padding: 2px 5px;">25만원+1억원</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나. 별도합산과세대상</p> <table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 5px;">2억원이하</td> <td style="padding: 2px 5px;">1,000분의 2</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2억원초과</td> <td style="padding: 2px 5px;">40만원+2억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10억원이하</td> <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10억원초과</td> <td style="padding: 2px 5px;">2백80만원+10억원</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1. 건축물</p> <p>가. 주택</p> <p style="margin-left: 20px;"><과세표준> <세율></p> <p>1,200만원이하 1,000분의 3</p> <p>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p> <p>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p> <p>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p> <p>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p> <p>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p> <p>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p> <p>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p> <p>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p> <p>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p> <p style="margin-left: 20px;">초과금액의 1,000분의 70</p> <p>나.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②(생략)</p>	<p>다. 분리과세대상</p> <p>(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p> <p>2. 건축물</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p>3. 주택</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p style="margin-left: 20px;"><과세표준> <세율></p> <p>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p> <p>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p> <p>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p> <p>1억원초과 24만원+1억원</p> <p style="margin-left: 20px;"> 초과금액의 1,000분의 5</p> <p>②(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거창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 3. <u>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 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p>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u> 3.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 4.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 5. <u>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 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6.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p>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p> <p>① <u>법 제184조</u>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p> <p>① <u>법 제186조</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p>제32조(----- 부동산-----) ①</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2.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p>②-----부동산-----</p> <p>-----100분의 75-----.</p> <p>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6. 토지·건축물 및 주택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이하</td> <td>18원</td> <td>800cc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cc이하</td> <td>18원</td> <td>1,000cc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cc이하</td> <td>19원</td> <td>1,500cc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cc이하</td> <td>19원</td> <td>2,000cc이하</td> <td>200원</td> </tr> <tr> <td>2,500cc초과</td> <td>24원</td> <td>2,000cc초과</td> <td>220원</td> </tr> </tbody> </table> <p>1의2. ~ 6. (생략) ② (생략)</p> <p>제41조의2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략)</p> <p>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6조(세율) ① ~ 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p>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p> <p>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00cc이하</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1,600cc이하</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의2 (세율) ①----- ----- 1,000분의 215----- ---.</p> <p>②(현행과 같음)</p> <p>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및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p> <p>제56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종합토지세</p> <p>제72조 내지 제83조 (생 략)</p>	<p><u>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2. 건축물 <u>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삭 제></p> <p><삭 제></p> <p>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8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생 략)</p> <p>5. (생 략)</p>	<p>제8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p> <p>5. <u>(현행 제4호와 같음)</u></p> <p>6. <u>(현행 제5호와 같음)</u></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기준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6월 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7월 16일 ~ 7월 31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토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6월 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p>	<p>제92조(세율) -----1,000 분의 1.5-----.</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u>재산세</u>----- ----- -----<u>재산세</u>----- -----.</p>
<p>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u> 2. <u>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3. <u>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u> 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u> 5. <u>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 6.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 <p>② (생략)</p> <p>③납세의무자가 <u>법 제192조</u>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p>	<p>제94조(신고의무) ①----- -----<u>건축물 및 주택</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 및 주택</u> ----- 2. <u>건축물 및 주택</u> ----- ----- 3. <u>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u> 4. <u>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u> 5. <u>건축물 및 주택</u> ----- ----- 6. <u>건축물 및 주택</u> ----- ----- <p>② (현행과 같음)</p> <p>③-----<u>법 제194조</u>----- ----- ----- -----.</p> <p>④-----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234조의21</u>의 규정에 의한 <u>종합토지세</u>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 ----- ----- -----<u>법</u>----- <u>제194조</u> -----<u>재산세</u> ----- -----.</p>
<p>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u>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u>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 ----- ----- -----<u>재산세과</u> <u>세대장에</u>----- ----- -----.</p>